

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

- 사용본거지·성명 등의 변경등록(법인과 외국인에만 해당함. 「자동차등록령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개인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정정신청, 변경신청,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경우,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봄)
 -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·군·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사용본거지·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 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(유효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튜닝승인
 -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- 이전등록
 -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범칙금)
 -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,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,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,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 -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말소등록
 - 사유(폐차요청 등) 발생일부터 1개월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) 이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)
-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
 -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.(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)

자동차등록증

○○시·도

5. 변경등록사항

㉞ 성명	㉟ 등록날짜	㊱ 확인

6. 튜닝사항

㉲ 내용	㉳ 검사날짜	㉴ 검사책임자확인

7. 기타

㉵ 내용	㉶ 날짜	㉷ 확인